■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8.29.>

도 태 권 고 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도태권고 내역	도태권고 이유						
	대상 두수				이행기간		
도태권고 대상가축	축종	품종	성별	연령	귀표(개체) 번호	특징	비고
도태지정 출하시설	시설(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태할 것을 권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위의 도태권고에 따라 출하된 가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태(도축・ 재활용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도태 실시 시설명:
2. 도태 두수:　　두
3. 도태 실시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